

**【전산회계1급 정오표(2023년 개정세법 반영)】**

페이지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
p271	<p>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</p> <p>㉕ 담보제공(담보목적으로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제공하는 것)</p> <p>㉖ 사업의 포괄양도(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)</p> <p>㉗ 조세물납(상속세, 지방세, 증여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)</p> <p>㉘ 특정법령의 공매나 경매(국세징수법상 공매 및 민사집행법상 경매)</p> <p>㉙ 공익을 위한 수용(공익사업, 정비사업을 위해 수용대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)</p>	<p>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</p> <p>(좌동)</p> <p>(추가)</p> <p>㉚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시행사업자의 매도 청구에 따라 재화인도(양도)하는 경우</p>									
p288	<p>(2) 면세적용 대상</p> <p>㉑ 여객운송용역- 시내외버스(천연가스 포함), 마을버스, 지하철, (일반)고속버스 (우등,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과세) [항공기, 고속철도, 전세버스, 자동차 대여사업, 택시 등은 과세이다]</p> <p>㉒ 도서(도서대여 포함), 신문(인터넷 신문구독료 포함), 잡지, 전자출판물 등 (단, 광고는 과세)</p>	<p>(2) 면세적용 대상</p> <p>㉑ 여객운송용역- 시내외버스(천연가스 포함), 마을버스(전기, 수소 마을버스 포함), 지하철, (일반)고속버스 (우등,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과세) [항공기, 고속철도, 전세버스, 자동차 대여사업, 택시 등은 과세이다]</p> <p>㉒ 도서(실내도서열람 및 도서대여 포함), 신문(인터넷 신문구독료 포함), 잡지, 전자출판물 등 (단, 광고는 과세)</p>									
p294	<p>㉓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</p> <p>모든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(과세분+면세분) 합계액이 기존 3억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2022년 7월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2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변경 적용한다. (세법개정)</p> <p>※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(출제빈도 낮음)</p> <p>공급자(판매자)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자(매입자)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. (신청기한: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)</p>	<p>㉓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</p> <p>- 모든 법인사업자</p> <p>-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(과세분+면세분) 합계액이 2023년 7/1일 이후부터 1억 이상의 개인사업자(2024년 7월1일 이후부터는 8,0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) (2023세법개정)</p> <p>※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(출제빈도 낮음)</p> <p>공급자(판매자)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자(매입자)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. (신청기한: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, 거래금액이 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인 경우 발급가능.)</p>									
	<p>(추가입력)</p> <p>전자(세금)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사업장별 공급가액</th> <th>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020년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이상</td> <td>2021. 7/1 ~ 2022. 6/30. 의무발급대상</td> </tr> <tr> <td>2021년 사업장별 공급가액 2억원 이상</td> <td>2022. 7/1 ~ 2023. 6/30. 의무발급대상</td> </tr> <tr> <td>2022년 사업장별 공급가액 1억원 이상</td> <td>2023. 7/1부터 계속 의무발급대상</td> </tr> <tr> <td>2023년 사업장별 공급가액 8,000만원이상</td> <td>2024. 7/1부터 계속 의무발급대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사업장별 공급가액	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간	2020년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이상	2021. 7/1 ~ 2022. 6/30. 의무발급대상	2021년 사업장별 공급가액 2억원 이상	2022. 7/1 ~ 2023. 6/30. 의무발급대상	2022년 사업장별 공급가액 1억원 이상	2023. 7/1부터 계속 의무발급대상	2023년 사업장별 공급가액 8,000만원이상
사업장별 공급가액	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간										
2020년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이상	2021. 7/1 ~ 2022. 6/30. 의무발급대상										
2021년 사업장별 공급가액 2억원 이상	2022. 7/1 ~ 2023. 6/30. 의무발급대상										
2022년 사업장별 공급가액 1억원 이상	2023. 7/1부터 계속 의무발급대상										
2023년 사업장별 공급가액 8,000만원이상	2024. 7/1부터 계속 의무발급대상										
p299	<p>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(불공제 거래들)</p> <p>㉕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</p> <p>[주의] 접대비 거래 + (전자)계산서 = 53면세</p>	<p>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(불공제 거래들)</p> <p>㉕ 기업업무추진비(접대비) 관련 매입세액</p> <p>(2023년 접대비명칭 변경 : 접대비→ 기업업무추진비)</p> <p>[주의] 기업업무추진비 거래 + (전자)계산서 = 53면세</p>									

